

예산총칙

2024년도 예산안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414,723,788	72,441,714
일반회계	2,071,521,409	62,145,642
특별회계	343,202,379	10,296,071
공기업특별회계	219,191,374	6,575,741
상수도사업	124,373,332	3,731,200
하수도사업	94,818,042	2,844,541
기타특별회계	124,011,005	3,720,330
공유재산관리	10,822,464	324,674
의료급여기금	10,590,074	317,70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29,525	886
교통사업	44,536,146	1,336,084
철도건설사업	40,267,979	1,208,039
폐기물처리시설	2,899,808	86,994
도시개발	2,413,070	72,392
공공시설등 설치	44,313	1,329
문화시설건립	919,837	27,595
도시재생	9,364,324	280,930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2,123,465	63,704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와 같다.
단, 각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한다.

제 3 조 2024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2024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634,837천원으로 한다.

- (1) 일반예비비 12,598,560천원
- (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00천원
- (3) 내부유보금 1,036,277천원

제 7 조 2024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09,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